브리핑
참고자료

원전 품질서류 위조사건 관련
원전운영 개선대책

2013. 6. 7 (금)

산업통상자원부

목 차

Ⅰ. 금번사건 개요 및 발생원인 ····· 1

Ⅱ. 책임자 문책 및 처벌 ····· 3

Ⅲ. 제도적 개선대책 ····· 4

1. 원전산업 유착관계 근절 ····· 5
2. 품질관리 강화 ····· 8
3. 구매제도 개선 ····· 11
4. 원전 안전관리 강화 ····· 14

Ⅳ. 이행 점검 ····· 16

Ⅰ. 금번 사건 개요 및 성격

1. 사건 개요

□ 원안위는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신문고에 접수된 "제어케이블*" 검증서류위조 제보(4월말) 조사과정에서 **신고리 1~2호기, 신월성 1~2호기**에 **시험성적서가 위조된**('08년초 위조 추정) **제어케이블 설치** 확인

* 원전사고시 원자로 냉각계통(살수펌프, 수소감시설비 등)에 작동신호 전달

□ 위조내용은 국내시험기관이 해외시험기관에 의뢰한 시험결과 자료 중 **불합격 부분**을 임의로 **삭제**하여 제출

* (원본) 12개의 케이블 샘플 중 3개만 합격 ⇒ (위조) 합격한 2개, 불합격한 1개 결과만 제출

2. 사건의 성격

□ 금번 사건은 작년 품질검증서 위조사건(영광 5·6호기 정지)과 유사하나, **시험·인증기관 자체가 위조주체**인 점에서 더욱 심각

* (품질검증) 일반 상용부품(퓨즈, 스위치 등)을 원전에 사용하기 위한 검증절차

□ 금번 서류가 위조된 기기(제어케이블)는 비상시 원자 안전성에 핵심적 안전장치로서, **원전 안전성에 직접적 영향**이 있는 사안

* (제어케이블) 원전사고 발생시 원자로 냉각을 위한 안전장치에 작동신호를 전달

□ 작년 위조서류 부품은 퓨즈, 스위치 등 대량의 소모품(일반 상용품)인 반면, 금번 해당 부품은 **원전의 특수설비**(주문 생산품)

< '12년 품질검증서 위조사건과 금번 사건 비교 >

	'12년 품질검증서 위조	금번 시험성적서 위조
위조 주체	납품업체의 대리점 (검증서 대행)	시험 기관 (시험성적서 발급)
안전성 영향	非핵심 안전등급 (Q3)	핵심 안전등급 (Q1)
해당 부품	퓨즈, 스위치 등 일반부품 (대량)	케이블 등 원전 특수설비 (소량)

3. 사건의 발생원인

◈ 금번 사건은 원자력계 폐쇄성에 기인한 **"불투명한 구매제도"**와 이를 견제해야 하는 **"품질관리 제도상 허점"**을 악용한 것임

◈ 향후 **철저한 책임규명**과 함께 **다각도의 제도개선** 노력 필요

(1) 원전부품 납품사와 시험기관간 유착

○ 현재 원전 구매제도는 **원전 납품사가 스스로 선택한 시험기관**의 성적서를 제출하므로, 납품사와 시험기관간 유착이 가능한 구조

* 특히 영세한 시험기관은 부품납품사(甲)에 대해 사실상 乙의 입장

(2) 구매절차상 시험성적서 진위확인 절차 미비

○ 원전 안전 규제체계상 시험성적서 검수기관(건설원전은 한전기술, 운영원전은 한수원)은 발주된 규격에 맞는 제품인지만 검수할 뿐, 시험성적서 자체에 대한 **진위확인 절차가 없음**

(3) 시험기관 관리·감독 체계 부재

○ 현재 원자력분야 시험기관은 **일반 시험기관과는 별도의 관리·감독 체계**를 갖고 있으나, 사실상 관리·감독 기능 작동이 안되는 상태

< 원자력분야 시험기관 인증 및 관리·감독 체계 >

·대한전기협회가 원자로시설 기기검증시험기관 인증제도 운영 (원안위 고시)
⇨ 전기협회는 제도 운영현황 보고의무(매년)가 있으며, 원안위는 시정 조치 가능

(4) 원전 산업계 폐쇄성

○ 원전 업계는 지난 30여년간 핵물질 취급자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, 감시와 견제가 없는 **폐쇄적 집단화** 현상이 심화

○ 이는 **각종 비리, 불투명한 제도, 무사안일한 업무관행**의 근본 원인

Ⅱ. 책임자 문책 및 처벌

1. 관련기관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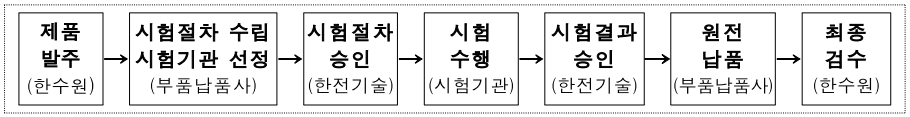
① 공급사(JS전선) : 제품 제작, 한수원에 시험성적서 첨부하여 납품

② 시험기관(새한TEP) : 전선공급사 의뢰에 따라 시험 및 성적서 작성

③ 1차검수기관(한전기술) : 시험성적서 확인 및 설계기준 충족여부 확인

④ 최종검수기관(한수원) : 관련절차 이행과 요구서류 구비여부 확인

< 원전부품 납품 및 시험·검증 절차 >



2. 책임규명 및 처벌

□ **(위법사항)** 시험성적 위조 혐의자에 대한 **민·형사상 조치**(5.28)

형사 고발		민사 가압류 신청	
JS전선 (주) 前 대표이사 ○○○	대검	JS 전선 (주)	대전지법 천안지원
새한 TEP 대표자 △△△ 새한 TEP 前 직원 ☆☆☆		새한 TEP	서울중앙지법

* 검찰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"원전비리 수사 특별TF"를 설치, 수사 중

□ **(업무책임)**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품질서류 검수 업무상 책임이 있는 **한수원·한전기술** 관련자는 엄중 문책

□ **(경영책임)**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, 금번 사건의 유관기관 책임자인 **한전기술** 및 **한수원 사장**의 경영상 책임 문책

○ 한수원 사장(김균섭)은 6.6(목) 면직 처리

○ 한전기술 사장(안승규)은 대주주인 한전이 해임절차 착수

Ⅲ. 제도적 개선대책

< 기본 방향 >

◈ 최근 원전분야 각종 비위사건의 근본 원인인 원자력계 폐쇄성 타파를 위한 **"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"** 우선 추진

☞ **①원전 납품구조상 유착가능성 제거, ②외부인사 영입 등 인적쇄신 확대, ③한수원 내부 인사제도 혁신**

◈ 금번 사건은 원전 부품 납품절차상 제도적 미흡에서 발생한 바, 다각도의 **"품질관리 강화 및 구매제도 개선"** 추진

< 품질관리 강화 >

☞ **①제3기관의 품질관리 감시절차, ②원전기기 전문인증관리기관 제도, ③시험·검증기관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강화, ④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간 연결고리 차단, ⑤ 한수원 內 구매-품질관리간 견제 강화**

< 구매제도 개선 >

☞ **①한수원內 구매사업단 역량 강화, ②입찰제도 투명성 강화, ③원전 부품시장 경쟁촉진 인프라 구축**

◈ 아울러 궁극적 목표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차원의 **"안전한 원전관리 방안"** 지속 추진

☞ **①신규원전 설비 사전 기술검증 강화, ②가동원전 안전관리 강화, ③중장기 안전관리 대책 수립**

1. 원전업계 유착관계 근절

가. 현황 및 문제점

□ 원전 산업은 구조적으로 **"경쟁이 제한"**되는 산업적 특성

○ **(공급측면)** 원전건설~운영까지 단기간 내 자립화를 추진한 결과, **Value Chain의 폭**이 다른 나라에 비해 **협소**

- 특히, '89년(영광 3·4호기(OPR 1000) 건설)부터 본격화된 **원전기술·부품 국산화 가속화**

 * 全 원전가동국가는 안정적 원전운영을 위해 기술자립 및 자국내 생산원칙 고수

○ **(수요측면)** 다품종에 **주로 주문제작 방식, 높은 기술조건** 요구

 * 원전 1기당 부품수 150만개중, 80% 이상 주문제작 방식

 * 발주정보 공개기간이 짧고, 긴급입찰이 빈번하여 기존 납품경험 업체가 유리

□ 또한 그간 원자력계는 국가보안시설(원자력발전소)을 이유로 많은 업무내용을 비공개해 오면서 **폐쇄적 특수집단화 고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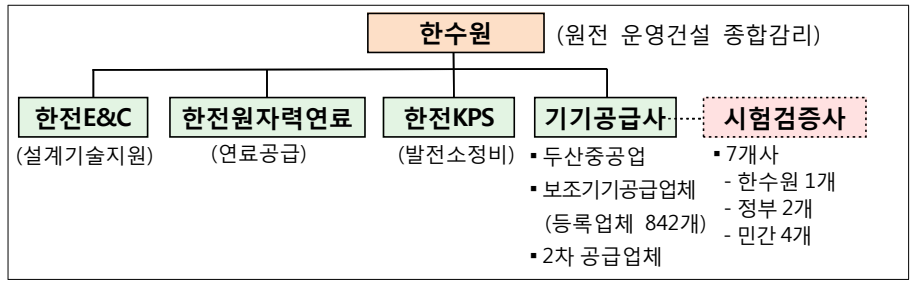
○ 또한 과거 한수원은 특정 학연·지연 중심의 극심한 파벌화 현상으로 인해 투명한 **감시·견제**와 공정한 **경쟁 문화** 不在

※ 그러나 원전의 특수성은 일부 시설(원자로 등)과 기능(방사선 관리 등)에 불과하며, 대부분 업무는 대형 플랜트산업과 다를 바 없음

(한수원 인력 중 원자력전공자는 8% 수준, 나머지는 기계·전기·토목·화학 등 다양)

⇨ 소수업체와 거래, 신규업체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구조 고착화

< 원전산업 구조 >



나. 개선 방향

1 원전 납품구조상 유착가능성 제거

< 이미 형성된 유착관계 제도적 타파 >

○ **(입찰자격제한)** 한수원, 한전기술 등 원전업계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에 대해 **입찰 적격심사시 감점 부과**

 * 국가계약법상 특례 인정 필요 (기획재정부 검토)

○ **(징벌적 손해배상)** 불법, 고의적 중과실로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**(⇒원안법 개정사항)**

< 향후 장래적 유착가능성 원천 차단 >

○ **(한수원)** 퇴직 후 협력업체(약 1천여개) 재취업을 금지하는 한수원 직원범위를 현행 1직급(처·실장) → 2직급(부장) 이상으로 확대

 * 위반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방안(계약·등록 취소) 검토
 * 한수원 임직원 행동윤리강령 규정 개정 사항

○ **(기타기관)** 한수원에서 시행중인 협력사 재취업 금지를 **원전분야 공기업 전반으로 확대** 시행 (한전기술, 한전KPS, 한전연료 등)

- 특히 한전기술 등은 "시험검증기관"까지 재취업 제한대상에 포함

 * 금번 서류위조기관(새한TEP)의 부사장은 한전기술 출신으로 확인
 * 관련 기관별 행동윤리강령 등 개정 사항

② 외부인사 영입 등 인적 쇄신 확대

○ 한수원 內 원자력계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혁신적인 **외부인사 영입** 및 **역량있는 내부인사 발탁** 등 인적쇄신 지속 추진

① '12년부터 시행중인 고위간부급 **외부전문가 수혈**을 **계속 확대**

* 외부영입(본사 처실장급 이상) : ('12년) 20% → ('13년) 30% → ('15년) 40% → ('17년) 50%

② 한수원 직위를 전문직위와 개방직위로 구분하고, **개방직위**에는 최대한 **외부 경력직 전문가** 영입

* 개방직위(예시) : 원전지역본부장, 기획본부장, 관리본부장, 건설본부장 등

③ 향후 **중간 관리자급**(부장·차장)까지 외부 영입 확대

○ 원전산업계 **퇴직자** 중 역량있는 인사 **재영입 방안**도 검토

* (예시) 원전 정비 및 안전감시분야 기술 고문 등

③ 한수원 내부 인사제도 혁신

* 한수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검토

○ 한수원 내부의 역량있는 인사 발탁을 위한 **상위직급임용* 제도 확대**

* 상위직급 보직에 차하위 직급자 임용을 허용하는 제도 (하위직급자 발탁제도)
⇒ (예시) 처실장(1직급 보직)에 2직급자도 임용 허용

○ 학연·지연 중심의 인사관행 철폐,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제도 운영 등 **인사제도 혁신 병행**

⇨ 상기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유착관계 근절방안 도출을 위해, **민간 컨설팅기관**의 **경영진단** 실시 후 **세부 개선대책** 수립

2. 품질관리 강화

가. 현황 및 문제점

□ 원자력안전법에 **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준수, 검사** 등 규정

< 현행 품증보증체계 >

〈발주·계약〉	〈기기검증〉	〈납품·검수〉
공개입찰 [한수원]	검증계획수립 [JS전선 ⇌ 한전기술]	기기제작 [JS전선]
업체선정 [한수원]	⇨ 시험성적서발행 [새한TEP]	⇨ 기기납품 [JS전선]
납품계약 [한수원 ⇌ JS전선]	성적서 검토 [한전기술]	납품검수 [한수원]

* 대한전기협회는 원안위 고시에 의거, 시험기관 인증·취소 등의 업무 수행

◈ ('96)성능검증업체 허가와 검사(과기처) ⇨ ('99) 규제완화로 폐지 : '08년 새한TEP 시험성적 위조 ⇨ ('10) 시험검증기관 인증제 시행(교과부)

□ **법·제도, 원전산업 생태계, 한수원內 조달구조**상 문제점이 내재

① 법·제도 및 시행상의 측면

○ 시험기관 관리 미흡, 시험기관 규제기능 미비, 검수기관의 진위 확인 절차 미비 등 기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·제도상 문제 노정

② 원전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측면

○ 하도급납품업자와 시험기관의 영세성, 시험수수료 지급구조상 문제 등으로 성능·품질 부실화와 유관기관 간 유착 가능성이 상존

* 원전기기 납품업자가 시험기관을 선정

③ 한수원內 부품조달조직의 구조적 측면

○ 구매부서의 품질검토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, 긴급구매 일정에 대한 품질보증부서의 견제기능 미비 등 조직 內 상호견제 기능 미흡

나. 개선 방향

1 제3기관의 품질관리 감시절차 신설

* 산업기술혁신촉진법(산업기술시험원 설립 근거) 개정 필요성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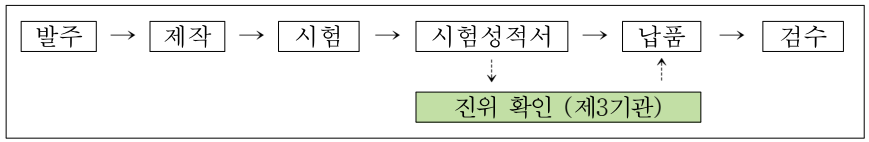
○ **(검증기관 지정)** 시험분야 전문성이 있는 **국책 시험연구기관**(산업기술시험원(KTL)* 등) 중 충분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

* KTL은 종합 시험인증기관으로서, 원전부품 시험 총괄이 가능한 국내유일 기관

○ **(검증 범위) 향후 제출되는** 원전 분야 품질서류에 대해 **원칙적으로 전량 검증**

- 제3기관은 품질서류 **"진위 확인"**을 통해 공정성·독립성 확보

< 제3기관의 시험성적서 점검 절차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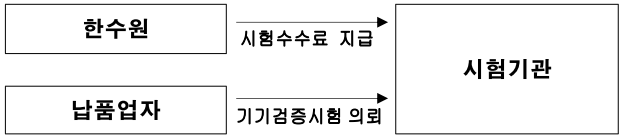


2 납품업체와 시험·검증기관간 연결고리 원천 차단

* 한수원 구매표준기술행정절차서 개정 사항

○ 최종 비용부담자인 **한수원이** 기기검증 비용을 **직접 시험기관에 시험 수수료** 지급

< 시험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출 흐름 >



* 납품업자가 시험기관(새한TEP 등)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약 100억원 추정

3 시험·검증기관에 대한 민·형사 책임 강화 (⇒원안법 개정사항)

○ 시험·검증기관의 **성능검증 업무 종사자**는 **공무원으로 의제**

⇒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법상 수뢰죄 등 적용

○ 시험·검증서류 위조·조작 등 **위법·부당행위**에 대한 **처벌 강화**

4 원전기기 전문인증관리기관 제도 도입 (⇒원안법 개정사항)

○ **전문인증관리기관**을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**원안위**가 **지정**

○ 현행 시험기관 **인증요건과 인증된 시험기관의 전면 재검토**

⇒ **인증요건**을 **강화**하여 자격있는 기관이 원전기기의 성능을 검증토록 하고, 정비된 요건에 의거 **시험기관 성능검증역량 확보**

○ 전문인증관리기관의 시험기관 성능검증업무에 대한 **정기검사**와 **시정조치, 인증취소** 등 실효성 있는 **사후관리와 규제기능 확보**

5 한수원內 구매-품질관리 조직간 견제기능 확충

* 한수원 직제규정 개정 사항

○ **구매부서**에 **전문기술인력을 보강**하여 1차적 품질 확보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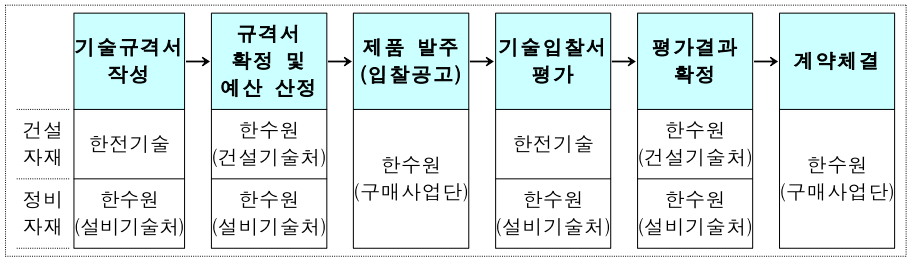
○ 성능검증을 최소한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구매부서의 원전기기 **긴급구매를 견제**하는 독립적 권한을 **품질보증부서**에 부여

3. 구매제도 개선

가. 현 황

□ **(절차) 한수원**은 관련 법률*에 근거, **구매의 全 과정을 자체 진행**

*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,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규칙, 한수원 계약규정 등



□ **(구매현황)** '12년도 총 7,009건, 3조304억원 규모의 계약 체결

○ **정비자재 업체(62%)가** 건설자재 업체(38%)의 **약 2배, 정비자재**의 경우 품목당 계약 금액이 **소액(850만원)**

○ **건설 자재**는 **독과점**적 구조(품목당 1~3개 업체)이나, **정비 자재**는 **비교적 다수 업체**가 경쟁하는 구조(품목당 10~70개 업체)

< 한수원 자재 구매 현황 ('12년) >

		건설자재				정비자재		합계	
		주기기		보조기기					
		품목수	업체수	품목수	업체수	품목수	업체수	품목수	업체수
원전 자재	Q등급	2개	1개	65개	136개	2,263개	199개	2,330개	336개
		(0.1%)	(0.3%)	(2.8%)	(40.5%)	(97.1%)	(59.2%)	(100.0%)	(100.0%)
	Non-Q	X	X	120개	371개	14,382개	206개	14,502개	577개
		-	-	(0.8%)	(64.3%)	(99.2%)	(35.7%)	(100.0%)	(100.0%)
일반자재		X	X	X	X	10,814개	412개	10,814개	412개
합계		2개	1개	185개	507개	27,459개	817개	27,646개	1,325개
		(0.0%)	(0.1%)	(0.7%)	(38.3%)	(99.3%)	(61.7%)	(100.0%)	(100.0%)

나. 문제점

□ 한수원 등 원전산업계는 국가적 안전시설인 원전을 운영하면서도 일반 공기업과 차별화된 **구매 감시제도 운용노력 미흡**

① **(전문성)** 구매조직이 기술적 우위를 갖추지 못하여 **계약절차만 이행**하고, **기술분야는 정비부서·한전기술에 전적으로 의존**

* 특히, '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공기업 인력축소 지침에 따라, 설계검토 기능이 외주화(한수원 → 한전 기술)되고, 관련 인력도 대규모 축소

* 프랑스 전력공사(EDF)는 구매조직의 엔지니어링 전문성이 세계 최고 수준

② **(유착·비리)** 한수원·한전기술 퇴직자의 **부품업체 상당수 재취업**, 불법행위 업체 **처벌도 미미**

▸ **부품업체는 품질·안전보다 시간·비용 단축, 거래관계 유지에 치중**

▸ **이러한 구조·행태가 불법행위·구매비리로 연결되는 악순환 반복**

다. 개선 방향

1 한수원 內 구매사업단 독립성 강화

⇒ **일부 추진중이나,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가능토록 보완·강화**

○ 구매사업단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강화시켜, 한전기술과 건설·설비기술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

* (과거) 지역본부별 개별 구매 → (1.8대책後) 구매기능 본사內 구매사업단(신설) 집중

- **외국인 등 엔지니어링 전문가 파격채용**, 법률·회계전문 직원도 보강

- 구매사업단 직원에 최상급 특수작업수당 지급 등 **인사상 우대 조치 검토 및 순환보직 기간 확대**(3년→5년) 등으로 **전문성 강화***

* 한수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사항

2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

* 한수원 계약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항

○ **(최고가치 낙찰제)**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(Q등급)에 대해 현행 최저가 낙찰제를 **"최고가치 낙찰제"**로 과감히 전환

- **건설공사**는 기술성을 우선 평가하는 **기술제안 입찰**('13.9월 예정), **자재구매는** 업체 역량을 우대하는 **'적격심사 제도*' 적용**

○ **(수의계약 최소화)** 구매 규격서 작성시 **수의계약 최소화 장치*** 마련

* 한전기술(건설자재)·설비기술처(정비자재)의 구매규격서 작성시 Spec이 과거와 달라진 경우, 그 사유와 납품 가능 업체 명시→ 구매사업단 집중 점검

○ **(구매계획 사전공개)** 구매규격서 확정전 **최소 10일이상 사전공개**를 통해 **이의신청 접수**

- 특히 정비시 구매항목에 대해 "중장기 물자수급계획"을 수립하여, **자재 구입계획의 사전고지기간 확대**(現 1년→3년)

3 원전부품시장 경쟁촉진 인프라 구축

⇒ **중장기 Value-chain 경쟁력제고·경쟁구조 확립의 근본대책 추진**

○ **(경쟁영역확대) 건설·정비자재 등 전체 "원전산업 Value-chain 진단 및 구조개편" 추진**

- 전문 컨설팅 업체 용역을 통해 부품 및 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경쟁도입이 필요한 영역 도출後 경쟁촉진방안 마련

* (例示) 범용성이 높고, 시장규모도 일정수준(例: 100억원) 이상이나, 1개 업체만 납품하는 품목

⇨ **「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」 구성, 구매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도출**

▶ 10인 내외 구매·품질보증 민간전문가 (원안위·조달청 추천전문가 포함)

▶ 2개월(6~8월) 운영 후 개선방안을 정부에 권고, 정부는 최대한 수용

▶ 사안별로 순차적으로 결정되는 즉시, 우선 발표하여 신속 시행

4. 원전 안전관리 강화

⇨ 원전 안전성은 원안위의 안전규제에 앞서 **원전 사업자의 사전적·예방적 안전조치**가 더욱 중요하며, 향후 **지속 추진** 필요

가. 현황 및 문제점

□ 신규원전 설비에 대한 사전 성능검증(한수원 건설부문 담당)이 미흡, 준공 후 **초기 가동시 고장정지 다수** 발생

* 한수원 건설부문이 설비 검증을 담당하나 준공에만 급급해 성능검증 소홀

□ 그간 원전 이용율 극대화를 위해 정비기간 최소화에 주력, **他원전 고장정지 개선사례 반영 미흡** 등 충분한 정비 부족

* 근본원인 분석보다는 문제설비(최근 디지털부품 등) 교체 및 조속한 재가동에 주력

○ 특히 최근 **발전정지 유발 취약설비***의 **고장정지 증가** 추세

* 디지털 제어·계측 설비, 주변압기, 주발전기, 터빈보호설비 등

나. 개선 방향

1 신규원전 설비 사전 기술검증 강화 (검증 시스템 개선)

○ 신규원전 설비검증 기능을 **건설부문 → 설비관리부문**으로 이관(선수와 심판 분리)하여, 신규원전 설비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

* 원전 가동중 설비문제 경험사례를 건설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사전 검증

2 가동원전 안전관리 강화

○ 발전정지 유발 취약설비에 대한 충분한 정비 및 운영중 점검 강화

* 디지털 제어·계측설비, 주변압기, 주발전기·터빈보호설비 등

○ 취약시간(심야·휴일)대 불시 고장·사고발생시 초기 신속한 조치를 위해 **발전소별 비상대응조 상시 운영** (3개조 24시간운영)

* 취약설비 현장점검(1일 2회), 인적실수예방, 사건발생시 초기대응역량 강화

※ 원전 안전관리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비·설비관리 전문 기술인력 확충 (기획재정부 검토)

3 중장기 안전관리 대책 수립

○ 현재 진행중인 全 원전 대상 "**국제 전문기관 특별점검**(5.27~7.31)" 결과를 토대로,「중장기 안전관리 개선대책」수립

< 국제 전문기관 특별점검 개요 >

· **점검기관** : TÜV SÜD (독일 원전 안전성 점검 전문기관)
· **점검대상** : 한수원 본사 및 全 원전
· **일정** : 13.5.27 ~ 7.26 (9주간, 본사→한울(울진)→월성→고리→한빛(영광))
· **내용** : ①주요설비 신뢰성, ②정비·엔지니어링 관리체계, ③품질보증 관리체계

Ⅳ. 이행 점검

⇨ 금번 개선대책은 월별 점검을 통해 **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**하고, **점검 결과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**

□ **(점검 방식)**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부처간 협업을 통한 이행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

* 1차 관계부처 차관회의(6.11) 개최

○ 산업부는「원전혁신 TF」팀을 구성하여, 지속적인 개선상황 점검

○ 한수원은 대책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, 이행상황을 계속 up-date

□ **(결과 보고)** 후속조치 및 개선대책 진행상황은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

□ **(실행력 강화)** 現 대책 발표(6월) 이후 발생하는 절차위반, 비리·부정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

○ 한수원은 핵심과제의 추진을 위한 조직·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 사항에 대한 이사회 승인 및 관계기관 협의 조속 추진

○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 시행 등